

보 상 계 획 열 략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삼양도련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제 주 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삼양도련지구)

나. 사업위치 :

- 소로1-10호선 : 제주시 도련1동 1834-3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75m, B=10m, 가로등, CCTV 등

라.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12월(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2. 보상대상

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삼양도련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나. 토지 및 물건 : 제주시 도련1동 1834-3번지 외 17필지

※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

3.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 7. 25. ~ 2019. 8. 8. (15일간)

나. 열람장소 :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62)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9년 9월 이후 ~ 사업완료시 까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 라.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 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마. 위 같은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 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나.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